의안번호	제260호
의결연월일	2024. 3. 13.

- 예산군 국기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3. 5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: 2024. 3. 5. 행정복지위원회

○ 상 정 일 자: 2024. 3. 13.

제29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: 박상목)

가. 제안이유

○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, 용어 정비 및 국기의 점검·관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기 게양·관리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국기 게양일 조항 신설(안 제3조)

- 윤봉길 의사 의거일(4월 29일)
- 경술국치일(8월 29일) 조기 게양
- 윤봉길 의사 순국일(12월 19일) 조기 게양
-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의 개최 기간
-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조항 통합(안 제4조)
 - 포괄적인 선양사업 추진 근거 마련
- 국기의 점검·관리(안 제7조) 신설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이범진)

- 본 조례안은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윤봉길 의사 의거일 4월 29일 등을 국기게 양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애국정신을 계승하도록 하였음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- 6. 심 사 결 과
 - ○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- O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O 없 음